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67호 2002.12.12)

총무위원회

2002. 12. 27(화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12. 12 : 사천시장제출
- 나. 2002. 12. 12 : 총무위원회회부
- 다. 2002. 12. 23 : 사천시의회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상정 보류
- 다. 2002. 12. 24 : 사천시의회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총무과장 김영고)

가. 개정이유

- 읍면동기능전환 관련한 정원과 실업대책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조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집행기관의 정원 중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과(5급1명)와 지역경제과 실업대책인력(행정6급1명) 등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 조정함.
 - 주민자치과 (행정5급 1명) : 2002. 12. 31 → 2004. 6. 30
 - 지역경제과 (행정6급 1명) : 2002. 12. 31 → 2003. 12. 31
 - 민원정보과 (전산7급 1명, 전산8급 1명) : 2002. 12. 31 → 2004. 6. 30
- ※ 한시정원 : 4명
 -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인력 : 주민자치과 행정5급 1명
 - 실업대책인력 : 지역경제과 행정6급 1명
 - 정보화기능보강 : 민원정보과 전산7급 1명, 전산8급 1명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개정조례(안)은 읍면동기능전환 관련한 정원과 실업대책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